

2016, 06,07일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474호(2016.05.25)

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

이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(이하 "약관"이라 함)은 수탁자인 하나은행 (이하 "은행" 이라 함)과 신탁거래자인 위탁자 및 수익자(이하 "거래처"라 함)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이익증식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신탁(이하 "신탁"이라 함)거래를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.

은행은 이 약관 및 신탁상품별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,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1 조 (적용범위)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(다만,



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제외함)거래에 신탁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.

- **제 2 조 (신탁관계인)** ① 이 약관에서 위탁자란 은행에 금전을 신탁한 자이며, 수탁자란 금전을 인수한 자, 즉 은행을 말합니다.
 - ② 수익자란 원금 및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.
 - ③ 제 ② 항의 수익자는 원금수익자와 이익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원금수익자인 동시에 이익수익자입니다.
 - ④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(다만,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), 수익자의 동의와 은행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권리는 위탁자 본인에 한하며 상속되지 아니합니다.

제 3 조 (실명 거래)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.



- ②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등 증표나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제 4 조 (거래장소)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"개설점" 이라 함)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. 다만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,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·현금자동 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"전신, 통신기기" 라 함)을 통하여도 신탁금의 입금이나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 5 조 (증서에 의한 거래)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증서(통장·전자통장 및 수익증권 포함. 이하 같음)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무통장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우나 자동이체, 전산통신기기 등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증서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.
- 제 6 조 (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) ① 거래처는 신탁거래에 사용할 거래처의 인감 또는 서명과 비밀번호 등은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
-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,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제 7 조 (입금)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, 가계수표 (이하 "수표"라 함)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.
 - ② 제 1 항의 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, 약속어음 등(이하 "기타증권"이라 함)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발행하고 동 기타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후 입금하며 증서는 수령증을 회수하고 발행하여 드립니다.
 - ③ 제 1 항의 수표 및 제 1 항의 기타증권에 대하여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.
- 제 8 조 (신탁성립시기) ①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신탁이 성립합니다.
 - 1.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 때
 - 2.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경우 에는 신탁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



- 3.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그 수표를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
- ② 제①항 제 3 호에 불구하고 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하는 경우 대지급요건·보증요건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을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는 신탁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신탁이 성립합니다.
- 제 9 조 (수표의 부도) ①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신탁원장에서 뺀 후, 거래처(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)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야 합니다.
 - ② 은행은 지급 거절된 수표를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,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(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)가 반환 청구하는 대로 돌려주기로 합니다.
- 제 10 조 (신탁금의 운용) ① 신탁금은 관계법령 및 신탁업감독규정과 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탁금과 합동하여 운용합니다.



- ② 신탁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은 다시 이를 담보로 수익자를 위하여 차입 할 수 있으며, 차입금은 원 신탁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합니다.
- ③ 신탁재산 중 한국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가로써 이를 은행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**제 11 조 (신탁재산의 표시)**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.
- 제 12 조 (이익배당) ① 신탁이익은 제 8 조에 따라 신탁이 성립한 날로부터 배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방법과 배당률로 계산하여 배당합니다. 다만, 수표로 입금 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계산하여 배당합니다.
 - ② 제①항의 배당률이 관계법령 및 신탁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



- 제 13 조 (신탁보수) 신탁보수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 중에서 취득합니다.
- **제 14 조 (조세 및 비용)**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.
- 제 15 조 (수수료)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② 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③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.



- 제 16 조 (신탁금의 지급) ①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거래인감(또는 서명)으로 날인(또는 서명)한 소정의 지급청구서에 신고한 비밀번호 등을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② 전산통신기기·자동이체 등 별도약정에 의한 지급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
 - ③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은행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습니다.
 -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,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 - ⑤ 은행은 제 4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"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


- ⑥ 수익자가 은행으로부터 제 4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3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- 제 17 조 (중도해지) ①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·수익자 연서로써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신탁재산 중에서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
 - ②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익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제 18 조 (양도 및 담보제공)**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



- 제 19 조 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 ① 거래처는 증서·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훼손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.
 - ② 거래처가 인감(또는 서명)·비밀번호·성명·상호· 대표자·대리인·주소·전화번호· 전자우편주소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.
- 제 20 조 (증서의 재발급) 제 19 조에 따라 증서·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가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.
- 제 21 조 (오류처리 등)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.
 -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.



- 제 22 조 (비밀보장) 은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.
- 제 23 조 (거래정보 제공)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(송금 포함), 신탁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,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정보의 제공요청자를 본인으로 간주하여 입금인, 입금금액,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**제 24 조 (통지방법)**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 - ② 은행이 제 1 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



- 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19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.
- 제 25 조 (면책)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,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 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(또는 서명)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,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 -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



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 3 자가 계좌번호,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- ③ 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9 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④ 제 1 항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(카드, 비밀번호 등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



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-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 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제 26 조 (약관변경 등)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 게시합니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



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. 다만,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-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

제 27 조 (약관의 적용)

- ①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신탁상품별 약관 및 별도약정에 정한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신탁상품별 약관 및 별도약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② 이 약관이나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.
- **제 28 조 (거래중지계좌 편입)** 은행은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신탁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 별도 관리할 수 있다.

부칙

- 제 1 조 (신탁금의 지급 및 중도해지의예외) ① 신탁금의 지급 또는 중도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은행휴무일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을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신탁상품의 만기 (원본교부일)
 - 2.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개시일



② 제 1 항의 규정은 2002.6.30.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. 단, 입금 건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신탁상품의 경우는 2002.6.30. 이전 입금분에 한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.